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8조, 제9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 시제품 제작 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성평가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하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업무 전반

- 1) 사업세부계획 수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
- 2) 제품 설계, 컨설팅, 특성평가(제품측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실시
- 3)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 추진성과 검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2.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45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145	22	7	116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26)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8조, 제9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시제품 제작 컨설팅·제작·특성평가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경쟁력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 운영 능력과 기술 및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005년 7월부터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탁·운영해 오며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이기에 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만큼, 수탁기관의 지원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제품 제작 이후의 사업화 연계 실적과 결과물의 활용도, 향후 매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